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72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이광희·최기상·이상식
조정식·김문수·윤종오
최민희·권향엽·박지원
윤건영·복기왕·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
3. 변경 전 내용량
4. 변경 전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
5. 변경 후 내용량
6. 변경 후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공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내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변경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u> <u>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u> <u>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u> <u>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u> <u>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u> <u>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u> <u>량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u> <u>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변경내</u> <u>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u> <u>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u> <u>터넷 포털을 통하여 식품등을</u> <u>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u> <u>하는 자가 운영·통제하는 유</u> <u>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게</u> <u>시판을 말한다)와 「식품위생</u> <u>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u> <u>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u> <u>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품명</u> 2. <u>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u> <u>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u> 3. <u>변경 전 내용량</u>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③ (생략)

4. 변경 전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

5. 변경 후 내용량

6. 변경 후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공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